

연구논문

성·유혹산업으로 유입되는 여성이주: 국제적 재생산노동분업의 맥락에서*

김희강** · 송형주***

(국문초록)

본 논문의 목적은 여성이주 중 성·유혹노동자의 유입 및 흐름에 주목하여, 성·유혹산업에 유입되는 여성이주를 국제적 재생산노동분업(international division of reproductive labor)의 맥락에서 분석하는 것이다. 국제적 재생산노동분업이란 생산노동과 재생산노동이 성별로 또한 국제적으로 분업화된 것으로, 저개발국 여성이 개발국으로 이주하여 재생산노동을 담당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성·유혹산업으로 유입되는 여성이주에 대한 기존 연구는 성매매 유입 및 여성이주자를 인권침해의 피해자로 보는 시각에 집중하여 왔다. 반면, 본 논문은 성·유혹산업에 유입되는 여성이주를 가부장제와 전 지구적 자본주의가 상호 교차하는 맥락인 국제적 재생산노동분업의 구조 속에서 살펴본다. 본 논문의 장점은 기존에 자주 논의되지 않았던 성·유혹이주노동자를 다룸으로써 여성이주의 논의 대상을 단지 확대한다는 점을 넘어선다. 국제적 재생산노동분업의 맥락에서 여성이주를 살펴보는 것은, 이주를 결정하는 여성의 선택이 거시적 제도와 구조의 동학 속에서 어떻게 구성되는지, '이주의 여성화'가 어떻게 전 지구적 체계의 성불평등을 유지시키는데 기여하는지 등을 보여 줄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주제어: 국제적 재생산노동분업, 여성이주, 이주의 여성화, 성·유혹노동자, 예술홍행비자

* 이 논문은 2014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4S1A5A2A01017119).

** 주저자,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부교수(heekangkim@korea.ac.kr)

*** 교신저자,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선임연구원(happyjsong@naver.com)

© 2017 계명대학교 여성학연구소

1. 문제제기

여성이주는 최근 사회과학분야에서 가장 주목 받는 연구 주제 중 하나이다. 많은 연구가 ‘이주의 여성화(feminization of migration)’라고 불리는 국제적인 현상에 주목하고 있다(Anderson, 2000; Ehrenreich and Hochschild, 2002; Hondagneu-Sotelo, 2001; Lutz, 2002; Parreñas, 2001). 이전의 여성이주는 주로 아내나 가족의 일원으로 남편이나 가장을 따라 이동하는 모습을 보였던 반면, 이주의 여성화는 여성이 독립된 노동자로서 생계유지를 위해 이동하는 노동이주의 모습을 나타낸다. 특히 이는 여성이주자가 성구별화된(gender-selective) 직업군으로 몰리는 현상으로 예를 들면, 가정부, 간병인 혹은 성·유흥산업 같은 업종으로 여성의 이주가 집중되는 것이다. 국제노동기구의 통계에 따르면, “제3세계”를 떠나는 이주인구의 50% 이상이 여성이며, 이 중 대다수는 가사노동자(가정부, 보모 등)로 일하거나 재생산노동이 상품화되고 전문화된 서비스 부문(관광, 건강관리, 오락, 성매매 등)에서 일한다(페데리치, 2013: 287).

일반적으로 이주의 여성화는 다음의 세 가지 직업군에 주목한다. 하나는 돌봄노동을 제공하는 가사노동자(혹은 간병인), 다른 하나는 결혼이주자, 나머지 하나는 성·유흥산업에 종사하는 성·유흥노동자이다. 본 논문의 발단은 “어떻게 성·유흥노동자가 이주의 여성화 현상에 포함될 수 있는가?”라는 단순한 궁금증에서 시작되었다. 이어 여성이주에 관한 다음의 두 연구는 본 논문의 문제제기에 보다 직접적인 배경이 된다.¹⁾

1) 본 논문에서 논의하는 ‘성·유흥산업’이란 ‘성산업’과 ‘유흥산업’을 포함한다. ‘성산업’은 성매매, 유사 성행위, 스트립쇼, 폰섹스 및 다양한 성적 여흥거리 등을 제공·이용하는 산업을 뜻한다. ‘유흥산업’은 상품(술)판매를 위해 춤이나 노래 등으로 유흥을 돋우는 유흥접객원(호스리스)을 두는 산업을 의미한다. ‘성산업’과 ‘유흥산업’은 다른 직업의 영역이다. 현재 한국에서 성매매 및 유사 성행위는 불법이지만, 유흥산업은 「식품위생법」상 규정이 되어 있는 합법적인 영역이다. 그러나 동시에 ‘성산업’과 ‘유흥산업’의 영역은 상당

하나는 파이퍼와 로세스(Piper and Rocés)의 연구이다(2003). 파이퍼와 로세스는 가사노동자와 결혼이주자의 연계 지점을 설명한다. 결혼이주노동이주의 양태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쟁적일 수 있지만, 결혼이주노동이주의 명확한 구분이 사라졌다는 점을 강조한다(Belanger and Linh, 2011; Kim, 2012; Yeoh and Heikkila, 2010). 결혼이주자는 유입국에서 가사를 담당하고 육아를 책임지는 가사노동자와 매우 흡사한 역할을 맡으며, 실제로 이들 중 대다수는 유입국의 노동시장에 취업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또한 이들 대부분은 취업여부를 떠나 여느 노동이주자처럼 자국에 돈을 송금한다. 따라서 파이퍼와 로세스는 여성이주 연구에 있어 가사노동자 혹은 결혼이주자 같이 “전형적인(stereotyped)” 개별 직업군으로 분리하는 기존 흐름을 비판하고, 이들 간의 연계 지점에 주목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이들이 유입국에서 갖는 노동자로서의 역할과 지위에 보다 관심가질 것을 제안한다(Piper and Rocés, 2003: 3).

다른 하나는 파레나스(Parreñas)의 연구이다(2008: 134-168; 2011). 파레나스는 여성이주 성·유혹노동자에 대한 기존 시각을 비판하고 이들이 겪는 구조적 제약에 보다 초점을 맞춘다. 파레나스에 따르면 현재의 국제 규범은 성·유혹업소인 클럽(clubs)이나 바(bars)에서 일하는 성·유혹노동자(일명 호스티스)를 인신매매나 성매매 피해자로 일반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미국 주도의 국제적 반인신매매(anti-trafficking) 운동에 영향 받아 많은 유입국들에서 이들의 이주를 엄격하게 제한하였고, 그 결과 이들의 수가 2000년대 중반 급격하게 줄어들었다고 언급한다. 일례로 대표적인 유입국인 일본은 흥행비자 요건을 강화하여 필리핀에서 이주하는 호스티스 유입을 제한하였고, 이러한 정책 변화로 인해 이들의 유입 규모가 1/10

부분 겹치기도 한다. 예컨대, 유흥접객원의 경우 업소에서 춤이나 노래 이외에도 다양한 성적 여흥거리를 함께 제공하기도 하며, 일부는 성매매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하 본문에서 자세히 언급하겠지만, 한국에 예술흥행(E-6)비자로 들어오는 이주여성의 많은 수는 유흥접객원으로 종사하는 것으로 보고된다.

로 줄었다. 그러나 파레나스에 따르면 일본의 이러한 정책 변화는 그 의도와 달리, 일본 내 필리핀 호스티스의 지위를 오히려 더 열악하게 만들었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성·유흥노동자에 대한 연구는 성·유흥노동자를 단지 인신매매나 성매매의 피해자로 보기보다 노동자로서 이들의 지위와 이들이 겪는 구조적 제약에 주목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고 파레나스는 지적한다(Parreñas, 2011: 32, 47-49).

파이퍼와 로세스의 지적처럼 여성이주의 개별 직업군이 서로 연계된다면, 성·유흥노동자는 어떻게 가사노동자와 결혼이주자와 연계되는가? 파레나스의 지적처럼 성·유흥산업으로 유입되는 여성이주가 노동이주의 모습이라면, 이들이 겪는 구조적 제약은 무엇인가? 그것이 가사노동자와 결혼이주자가 겪는 구조적 제약과 어떻게 연계되는가? 보다 종합적으로, 성·유흥산업으로 유입되는 여성이주는 왜 그리고 어떻게 ‘이주의 여성화’ 현상으로 설명될 수 있는가? 논문은 이러한 질문에 답하고자 한다.

이러한 문제제기가 유의미한 이유는 본 연구가 기존 논의와는 다른 시각으로 ‘성·유흥산업으로 유입되는 여성이주’에 접근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여성이주 성·유흥노동자에 대한 관심은 이전에도 있어왔다. 그러나 앞선 파레나스의 지적처럼, 대다수 연구는 이들 여성을 인신매매와 성매매 착취의 피해자로 주로 보고 있다(CEDAW, 2011). 이들이 겪는 성매매 피해와 인권침해는 어떤 모습인지(고현웅 외, 2006; 설동훈 외, 2003; 장준오 외, 2011; ILO, 2010), 이들을 구제하기 위해 미국을 위시한 국제사회는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하는지(장준오 외, 2009; U.S. Department of State, 2014), 인신매매와 성매매 착취를 막기 위해 유입국은 어떤 정책과 제도를 갖춰야 하는지를 다룬다(두레방, 2007; 안태윤, 2012; 유명님, 2010;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편집팀, 2010). 국내 여성단체도 본래 예술홍행비자가 예술인, 운동선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수인재를 적극 유치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이나 그것이 성매매로 오용되고 있는 문제점을 거듭 강조하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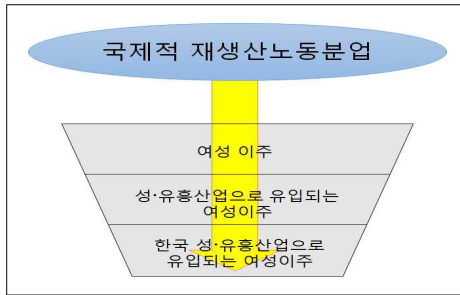
하였다(두레방, 2007). 최근 국가인권위원회(2012: 25-27)의 보고에 의하면, 2011년 현재 한국의 예술홍행비자 체류자 총 4,721명 중 미등록자는 1,504명으로 32%의 미등록률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이주노동자 중 가장 높은 비율이다. 이처럼 미등록률이 높다는 것은 이들 여성에 대한 성추행과 성매매 강요 등 고용계약과는 다른 노동을 강요하고 폭력과 잦은 이송, 매상 압박 등 인권침해의 요소가 크다는 점을 의미한다고 언급한다. 그러나 이렇듯 여성이주 성·유혹노동자에 대한 국내의 관심은 주로 이들의 성매매 유입과 피해의 관점에 제한되어 있을 뿐, 여성이주의 거시적인 맥락에서 이들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한계가 있다. 즉, 이들의 이주가 어떠한 국내외 제도와 구조 속에서 이뤄지고 있었는지에 대한 체계적이고 일관된 분석이 부재한 상태이다.

본 논문의 목적은 크게 세 가지이다(〈그림 1〉 참조). 첫째, 여성이주를 국제적 재생산노동분업(international division of reproductive labor)의 맥락에서 분석하는 것이다. 국제적 재생산노동분업 구조의 일반적인 특징을 살펴보고, 여성이주가 국제적 재생산노동분업의 맥락에서 어떻게 생성·유지되는지에 분석해 본다. 둘째, 여성이주의 범위를 좁혀 성·유혹산업으로 유입되는 여성이주를 국제적 재생산노동분업의 맥락에서 분석해 본다. 성·유혹산업으로 유입되는 여성이주가 보편적인 국제적 재생산노동분업의 일환이면서도, 동시에 어떤 다른 특징을 갖는지 함께 제시해 본다. 셋째, 한국의 성·유혹산업에 유입되는 여성이주를 국제적 재생산노동분업 구조의 맥락에서 분석해 본다.²⁾ 국제적 재생산노동분업의 일반적인 특징이 한국의 사례에서 어떻게 유사하게 혹은 다르게 반영되어 나타나는지를

2) 이주의 여성화는 국제적인 현상이지만 최근에 들어 지역 내 현상으로도 주목을 받는다. 예를 들어, 최근 아시아 지역에서 이주의 여성화가 급격히 목도되고 있다는 보고가 있다(Castles and Miller, 2009: 133-134). 본 연구는 국제적·지역적 차원에서 발견되는 이주의 여성화 현상이 한국 사례를 통해 특정 국가의 맥락에서 어떻게 발현되는지에 주목하고자 한다.

탐색해 본다. 이는 보편적 수준의 국제구조가 구체적인 한국 사례를 통해 어떻게 투영되어 실제로 운용되는지 살펴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림 1〉 연구의 목적과 대상



본 논문은 다음의 순서로 구성된다. 첫째, 국제적 재생산노동분업의 맥락에서 여성이주(2장)를 분석한다. 다음으로 성·유혹산업으로 유입되는 여성이주(3장), 한국의 성·유혹산업으로 유입되는 여성이주(4장)를 분석한 후, 결론 및 함의(5장)를 제시해 본다.

2. 여성이주와 국제적 재생산노동분업

개인은 다양한 이유로 이주를 결정한다. 개인의 다양한 이주 원인과 흐름을 보편이론으로 설명하기란 어쩌면 불가능한 일이다. 그럼에도 최근의 많은 연구는 '이주의 여성화'라는 여성이주의 특정한 패턴에 주목하며 이를 설명할 수 있는 구조적 맥락을 설득력 있게 제시한다(Parreñas, 2001; Piper, 2008; Truong, 1996). 캐슬과 밀러(Castle and Miller)의 지적처럼, 이주란 "집단적 현상"이며, 그것이 "개인적 결정"이라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는 국내외 제도와 구조에 영향 받은 “공적 산물”이라는 점에 유의하는 것이다(2009: 25-26).³⁾ 다시 말해, 이들 연구는 여성이주가 특정 직업군으로 몰리는 이주현상을 야기하기는 거시적 구조와 체제를 강조한다(Palriwala and Uberoi, 2008: 11).⁴⁾

‘이주의 여성화’를 설명하는 구조적 맥락으로 제시되는 것이 바로 국제적 재생산노동분업이다. 국제적 재생산노동분업이란 생산노동과 재생산노동이 성별분업화(남성 대 여성)뿐만 아니라 국제 분업화(개발국 대 저개발국)됨을 의미한다. 생산노동이란 주로 공적영역, 즉 노동시장에서 운영되는 노동으로 일반적으로 임금노동을 의미한다. 재생산노동이란 주로 사적영역에서 생산노동을 뒷받침하는 노동으로, 돌보는 일, 먹이는 일, 입히는 일, 양육, 교육과 같이 사회에서 생산 노동자가 될 수 있는 능력을 지니도록 하는 일을 뜻한다(Parreñas, 2008: 12). 생물학적으로 자녀를 출산하는 일, 보다 폭넓게는 전형적인 여성성(양육자이자 동시에 성적 대상)을 담보로 하는 노동도 재생산노동에 포함된다. 재생산노동에서의 ‘재생산’은 우리의 삶과 노동을 매일같이 재구성할 수 있게 해주는 관계와 활동의 ‘복합체’라 할 수 있다(페데리치, 2013: 21). 일레로, 포르투나티(Fortunati)는 자본주의 아래에서 재생산은 많은 다양한 부분들로 이루어지지만, 가사노동과 성매매(성노동)가 재생산노동의 두 가지 중추라고 설명한다. 그녀는 자본주의 도래에 따른 성별분업과 가족의 성립이 남성을 생산노동에 종사하는 임금노동자이자 생계부양자로, 여성을 재생산노동에 종사하는 자로 위치

3) 사센(Sassen) 역시 유사한 지적을 한다. 여성의 이주 선택은 일면 “집합적 선택”이며, 이러한 집합적인 선택은 단지 개별 이주여성 선택의 총합이라기보다 국내외적 제도와 구조에 영향 받은 제도화의 산물이라고 본다(Sassen, 2002: 265).

4) 이들 연구가 여성 개인의 주체성/행위자성(agency)을 쉽게 간과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해둔다. 존스와 셴(Jones and Shen)은 이주구조와 체제의 초점을 맞추는 경우 여성 개인의 다양한 선택과 경험을 단순화하는 위험이 있다고 비판한다(2008: 20). 이주여성 개인의 선택과 경험에 주목한 연구로는 Freeman(2005), Nakamatsu(2003), Palriwala and Uberoi(2005), Suzuki(2003)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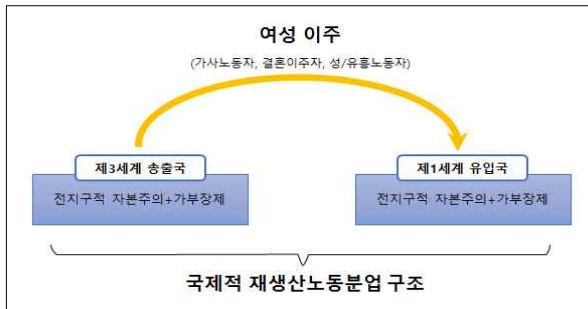
지었다고 설명하면서, 임금노동자인 남성 측에서 볼 때 가사노동과 성매매는 모두 ‘재생산노동’에 속한다고 분석한다. 남성에게는 성 시장에서 성적 욕망의 충족이 가정에서 휴식과 아내를 통한 성적 욕망의 충족과 마찬가지로, 이후 회사에 나가 일을 하기 위한 노동력 재생산의 다른 측면들이라는 것이다(김현경, 2015: 13-14; 포르투나띠, 1997: 60-79).

국제적 재생산노동분업의 가장 주요한 특징은 저개발국 여성이 개발국의 재생산노동을 담당하는 것이다. 이들은 주로 개발국의 가사노동자로 취업하거나, 출산 및 가사, 육아를 책임지는 결혼이주자의 신분으로 이주한다. 이주가사노동자는 노동시장에 진출한 유입국 여성들을 대신하여 유입국의 가정에서 청소 및 가사, 아이돌보기, 노인수발 등을 수행한다. 결혼이주자는 유입국의 가정으로 직접 편입되어, 아이를 낳고 양육하며 가사를 담당하는 등 가족구성원의 재생산적 필요를 만족시키는 노동을 수행하게 된다. 이는 결국 제3세계 여성이 제1세계로 이주하여 재생산노동(주로 돌봄노동)을 담당하는 것으로, 이는 “재생산노동의 국제적 재구조화,” “돌봄의 전지구화,” “돌봄 사슬”로 표현되기도 한다(페데리치, 2013; Hochschild, 2000; Parreñas, 2008: 40-41).

국제적 재생산노동분업은 이주여성이 개발국의 재생산노동으로 유입되는 ‘이주의 여성화’ 현상의 구조적 맥락을 구성한다. 동시에 이는 패턴화된 여성이주 흐름의 요인 및 동학을 함께 보여준다. 그러한 요인 및 동학은 가부장제와 전 지구적 자본주의가 상호 교차하는 맥락에서 구성된다. 다시 말해, 국제적 재생산노동분업은 가부장제와 전 지구적 자본주의의 거시적 구조와 체제 속에 위치해있으며, 이를 통해 ‘이주의 여성화’라는 여성이주의 특정한 패턴이 생산·재생산되는 모습을 보인다(Parreñas, 2001: 62-78). 가부장제란 성불평등한 위계 속에서 성별역할분담(남성 생계부양자, 여성 양육자)을 전제하고, 여성(성)을 남성(성)을 유지하고 존속하기 위한 성적 대상으로 간주하는 사회구조와 체제이다. 전 지구적 자본주의란 신자유주

의 중심의 세계화를 의미하며, 이로 인해 개발국과 저개발국 간의 경제격차 및 불평등이 보다 악화되는 모습을 보인다. 전 지구적 자본주의로 인해 개발국과 저개발국 간의 위계구조가 보다 강화되는 것이다.

〈그림 2〉 국제적 재생산노동분업 구조



국제적 재생산노동분업은 송출국과 유입국의 가부장제와 전 지구적 자본주의의 구조와 맥락 속에서 여성이주가 야기되고 유지되는 동학을 내포한다(〈그림 2〉 참조). 본 논문은 이를 1) 송출요인, 2) 유입요인, 3) 이주 여성의 위치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이것이 바로 가부장제와 전 지구적 자본주의가 결합한 국제적 재생산노동분업 구조의 주요한 특징이다.

1) 국제적 재생산분업 내 송출요인

여성이주의 직접적인 송출요인은 송출국의 빈곤, 즉 경제적 결핍이다. 개발국과 저개발국 간의 불평등은 전 지구적 자본주의로 인해 가속화되고 있다. 저개발국 경제는 더욱 어려워지고, 이에 저개발국에서 일자리를 찾아 개발국으로 이동하는 국제적 노동력 이동이 전개된다(Sassen, 1988). 저개발국의 여성은 빈곤에서 벗어나기 위해, 다시 말해 돈을 벌기위해 개발

국으로 이주한다. 이는 일반적인 노동이주의 주된 이주 원인이기도 하다.

더불어 주목할 것은 저개발국 여성의 본국 내 지위이다. 대다수의 저개발국 국민이 빈곤을 겪지만, 특히 여성은 남성에 비해 더욱더 사회경제적 지위가 열악하다. 송출국의 가부장적 제도와 성불평등으로 인해, 여성은 남성에 비해 경제활동의 기회가 적고, 참여하더라도 제한된 저임금 직종에 주로 취업한다. 따라서 여성은 전반적으로 남성에 비해 더욱더 빈곤하며, 이러한 빈곤을 벗어날 기회가 더욱더 제한된다. 예를 들어, 주목할 최근 몇몇 연구는 여성이주의 대표적인 송출국인 필리핀의 가부장적 법과 제도가 여성이주를 부추기는 주된 요인이 된다고 지적한다(Asis, 2005: 39; Parreñas, 2008: 22-39). 필리핀 사회의 성별역할분담과 이에 따른 남녀 임금격차 및 직업분리로 인해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아진 필리핀 여성들이 국제이주를 통해 직업을 찾는다는 것이다.

전 지구적 자본주의 아래 진행된 송출국의 정책도 또 다른 주된 송출요인이다. 일반적으로 저개발국의 주요 목적은 외화축적을 통한 경제발전이며, 이 경우 자국의 노동력을 수출함으로써 경제성장을 꾀한다. 필리핀의 경우, 2010년 기준 전체 인구의 1/10이 해외에 거주하고 있으며, 이들이 해외에서 보내오는 송금액이 필리핀 GDP의 약 10%를 차지한다고 보고된다(오윤아 외, 2012: 126-128). 이들 국가들에서 국제이주는 국내 실업률을 감소시키고, 송금을 통해서 외화를 획득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이 상당한 영역이다. 이주자가 고향으로 보내는 돈은 많은 저개발국에서 중요한 경제적 요소가 되고 있다. 일례로, 필리핀,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같은 주요 송출국들은 노동이주를 장려하며, 특히 여성의 노동이주를 조장하는 사회담론과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친다(Ehrenreich and Hochschild, 2002: 7; Sassen, 2002: 271-272). 이주여성들은 이들 국가 지도자들로부터 국가의 “영웅(hero)” 칭호를 부여받기도 한다(Asis, 2005: 26-30). 이 때 여성의 노동력은 외화벌이의 주요한 대상이자 수단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아이

러니하게도 여성의 노동력에 의존하는 송출국의 이러한 국가정책은 앞서 언급한 송출국 내 가부장적 법과 제도와 일면 배치되는 것이기도 하다 (Parreñas, 2008: 18).

2) 국제적 재생산분업 내 유입요인

경제발전국인 유입국에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대체로 높은 편이다. 그러나 여성의 높은 경제참여에도 불구하고, 주요한 유입국에서 초차성별역할분담과 가부장제의 영향으로 재생산노동은 여전히 여성과 가정의 몫으로 남아 있다.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증가로 인해 이전에 여성이 사적 영역에서 담당했던 재생산노동에 대한 공백이 생기게 되었으며, 저개발국의 이주여성이 이러한 공백에 따른 수요를 채우게 되는 것이다. 즉, 유입국의 “돌봄 공백”이 저개발국 여성의 이주를 이끄는 직접적인 유입요인으로 작동하게 된다(Ehrenreich and Hochschild, 2002: 8-11). 특히 중산층 이상의 유입국 가정과 여성은 이주여성의 재생산노동을 사적으로 구매하는 모습을 보인다. 일례로, 홍콩의 경우,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의 증가와 동시에 재생산노동에 대한 여성책임 부담으로 인해, 1990년대 이후 부유한 홍콩 가정을 중심으로 이주가사노동자의 고용이 증가하였다. 1990년대 홍콩에서는 전체 홍콩 가정의 20%가 이주가사노동자를 고용하였다고 보고된다(Wee and Sim, 2005: 179-180).

유입요인에서 흥미로운 점은 전 지구적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의 영향으로 인해 많은 유입국들에서 여성의 경제활동참여로 인한 재생산노동의 공백에 대한 공적 책임을 묵인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결과 재생산노동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는 공적 복지 지원을 추진하지 않거나 축소하고 있다. 여성이주의 주요 유입국들은 공적 복지체계가 부재한 국가들이고 따라서 여성과 가정이 사적으로 이주여성의 재생산노동을 구매하는 경우인데, 실

제로 이주여성이 많이 거주하는 미국과 스페인, 그리스, 이태리 같은 남부 유럽 국가들이 그러한 경우에 속한다(Kofman et al., 2000).⁵⁾ 캐나다, 네덜란드, 대만도 이주여성의 유입을 재생산노동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해결책으로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는 경우이다(Lan, 2006; Misra et al., 2006). 이는 국가가 나서서 재생산노동의 시장화를 독려하고 재생산노동의 여성화를 조장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Parreñas, 2008: 12-13).

3) 국제적 재생산분업 내 이주여성의 위치

앞서 설명한 송출요인과 유입유입을 고려했을 때, 이주여성은 송출국과 유입국 모두에서 필요한 존재이다. 송출국은 이주여성이 보내는 송금에 전적으로 의존하며, 유입국은 이주여성이 제공하는 재생산노동에 전적으로 의존한다. 이를 두고 사센(Sassen)은 “생존의 여성화(feminization of survival)”라 표현한다(2002: 258). 송출국과 유입국 모두 생존을 위해 이주여성에게 의존하고 있는 양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이주여성은 경제발전의 수단이나 돌봄 위기 해결의 도구로 간주될 뿐, 여성이주는 국제적 재생산노동분업 구조 아래에서 송출국과 유입국의 가부장제를 유지·강화하는 동학으로 작동한다(Sassen, 2002: 256). 송출국의 입장에서 볼 때, 이주여성은 고향에 남겨둔 자녀와 가족에게 상당한 금액을 송금하는 생계부양자 역할을 담당한다. 이 때 이주여성은 가족 내에서 중요한 권한을 갖는 의사결정자가 되기도 하며, 이를 통해 가부장제의 전형적인 성별분업에 도전하는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백재희, 2000: 35). 하지만 최근의 많은 연구들은 이주여성이 떠난 송출국의 돌봄 공백이 또 다시 고향에 남겨진 여성가족들(할머니, 이

5) 이에 반해 공적 복지시스템을 잘 갖춘 스칸디나비아 복지국가들의 경우 이주가사노동자에 대한 의존도는 상당히 떨어진다(Parreñas, 2008: 56).

모, 고모, 딸 등)의 재생산노동 수행에 의해 주로 메워진다는 점, 즉 여성 이주가 가부장적 성별분업에 큰 변화를 주지 못한다는 점에 주목한다(Hochschild 2002; Parreñas, 2005). 유입국의 입장에서 볼 때, 이주여성의 재생산노동은 저임금의 성별화된 노동이다. 유입국의 돌봄 공백이 이주여성을 통해서 저비용으로 메워짐으로써, 유입국의 가부장적 재생산노동은 이주여성으로 인해 더욱 고착화되는 모습을 보인다.

최근 몇몇 송출국에서 자국의 이주여성에 대한 보호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나, 이마저도 이주남성에 비해 혜택이 제한되어 있으며, 이 역시 보호와 장려라는 이중적인 메커니즘 속에서 모호하게 운영되고 있다. 송출국의 입장에서 이주여성은 보호의 대상임과 동시에 경제성장을 위해 활용해야 할 수단이기 때문이다. 이주여성의 저임금은 노동력 수출의 원동력임으로, 국제적으로 최소 임금을 요구하거나 일정 수준의 노동 조건을 보장하도록 강력히 요구하기 어렵다.

유입국에서 사적 영역의 재생산노동을 담당하는 이주여성에 대한 권리 보호는 상당히 미흡하다. 주로 사적영역인 가정에서 행해지기 때문에 정책의 실제적인 적용이 또한 어렵기도 하다. 예를 들어, 가사노동자의 경우, 장기거주권이나 가족동반권(family union)을 인정받지 못하는 등 다른 직종의 이주노동자에 비해 제한된 권리만을 부여받는다. 중동이나 아시아의 유입국들에서는 이주남성에 비해 이주여성에 대한 보다 엄격하고 차별적인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Parreñas, 2008: 58-59). 홍콩에서는 영주권 신청에서 이주가사노동자의 경우는 신청제한이 있으며, 최저임금법에서 ‘이주’ 이주가사노동자는 그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대만의 경우도 다른 이주노동자들과 달리 이주가사노동자는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싱가포르에서 이주여성은 자국 시민권자와의 결혼이 금지되며, 6개월마다 임신여부가 포함된 건강검진을 받아야 한다(최서리 외, 2013: 19-41). 가정 밖에서 병원 간병인이나 성·유형노동자와 같이 가정 바깥에서 노동을 하

는 경우라 할지라도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인 경우가 많다. 한국에서는 이주여성, 특히 결혼이주자에 대한 정책이 주로 시행되고 있지만, 이는 이주 여성에 개인에 대한 지원정책이 아니라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의 성격이 강하다. 자녀를 생산하고 돌보는 어머니와 아내의 역할을 강조하는 정책이다. 시민으로서 이주여성에 대한 정책이 아니라, 재생산 공백이 발생하고 있는 한국의 가족에 대한 해결책 혹은 수단으로 여겨지고 있다.

3. 성·유혹산업으로 유입되는 여성이주와 국제적 재생산노동분업

이 장에서는 성·유혹산업으로 유입되는 여성이주를 국제적 재생산노동분업의 맥락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국제적 재생산노동분업은 ‘이주의 여성화’라는 패턴화된 여성이주의 동학을 설득력 있게 설명할 수 있다고 앞에서 살펴보았다. 가사, 양육 및 돌봄을 중심으로 하는 재생산노동 분야의 여성노동이주는 국제적 재생산노동분업의 맥락에서 자주 언급된다. 그렇다면 성·유혹노동자의 이주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국제적 재생산노동분업의 맥락에서 성·유혹산업으로 유입되는 여성이주는 여성노동이주와 어떤 유사점 및 차이점을 갖는가? 2장에서 제시한 국제적 재생산노동분업의 세 가지 분석 지점 — 1) 송출요인, 2) 유입요인, 3) 이주여성의 위치 — 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1) 국제적 재생산분업 내 송출요인

국제적 재생산분업 내 여성이주의 주요 송출요인은 송출국의 여성빈곤과 여성노동이주를 조장하는 송출국의 정책이었다. 이러한 송출요인의 동

학은 '성·유흥산업으로 유입되는 여성이주'도 유사하게 적용된다. 성·유흥산업으로 유입되는 여성이주의 주된 송출요인도 역시 송출국의 빈곤이다. 이는 경제세계화로 인한 개발국과 저개발국 간의 경제적 불평등으로 말미암아, 저개발국에서 개발국으로 일자리를 찾아 이동하는 여성노동력의 이동으로 이해된다. 이는 성·유흥산업으로의 여성이주가 다른 여느 노동이주와 별반 다르지 않음을 보여준다. 이는 전 지구적 차원에서 광범위하게 증가하는 이주여성의 성·유흥산업에의 종사는 국가 간 경제적 불균형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는 배리(Barry)의 지적과 맞닿아 있다(배리, 2002).

예컨대, 1992년 이후 동유럽 출신 여성들의 서유럽지역 성·유흥산업으로의 유입이 눈에 띄게 증가하였다(Kofman et al., 2000: 63). 체제전환을 전후하여 서유럽의 성·유흥산업으로 유입되는 동유럽 여성들의 수가 증가한 것이다. 서유럽국가의 성·유흥산업에 동유럽출신 여성들의 이주가 증가하는 이유는 송출국의 경제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체제전환 이후 나라마다 차이는 있지만, 동유럽 국가들은 노동시장에서 경쟁 심화, 실업, 직업 안정성 상실, 사회서비스의 감소 등 불안정한 사회경제적 환경에 처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회경제적 충격은 남성에 비해 여성이 보다 큰 것으로 조사된다. 체제전환 과정에서 동유럽 국가들은 어린이와 노인을 위한 돌봄 시설을 축소 혹은 해체함으로써, 가정에서 여성의 부담을 증가시키고 여성의 경제활동을 크게 위축시켰다. 체제전환 이후 체코의 경우, 여성가장 가구의 빈곤위험률은 남성가장 가구의 두 배 반이나 높았으며, 그의 동유럽 국가들에서도 2-3배 정도 높았다. 거의 대부분 동유럽 국가들에서 '빈곤의 여성화' 현상이 나타났다. 이러한 요인들은 결국 동유럽 여성이 남성에 비해 좀 더 이주를 고려하고 선택하도록 만든 요인이기도 하다(김경미, 2009: 78-79; 윤덕희, 2001).

더불어 송출국의 노동력 수출정책도 성·유흥산업으로의 여성이주를 조

장하는 또 다른 주요한 요인이 된다. 실제로 모든 송출국이 자국민을 성·유흥산업에 취업하도록 권장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주요 송출국은 이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이주를 용이하게 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는 사실이다. 예를 들어, 필리핀과 한국은 일본에 거주하는 성·유흥이주 노동자의 주요 송출국이었다. 이 두 국가는 1981년부터 2004년 일본이 비자 자격요건을 강화하기 전까지 일본의 흥행비자 자격요건이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유일한 국가였다. 일본은 흥행비자를 받기 위한 연예인 자격요건으로 일본 외 지역에서 2년간의 연예인 취업경력 혹은 2년간의 연예인 예비생 훈련기간을 요구하였지만, 주요 송출국인 필리핀과 한국 출신 노동자의 일본으로의 유입에서는 이러한 자격요건에서 예외로 적용되었다. 유입국 일본은 이 두 국가는 연예인 자격에 대한 평가권한을 송출국가 측에 위임하였고, 그 결과 필리핀과 한국은 모두 2년의 자격조건 보다 유연한 평가기준을 제시하였다. 필리핀의 경우, 댄서는 6개월의 훈련기간 혹은 가수는 그 보다 더 짧은 기간으로도 연예인 자격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Parreñas, 2011: 32-35). 이는 필리핀과 한국 정부가 자국 여성의 일본의 성·유흥산업으로의 이주를 용이하게 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볼 수 있다.

2) 국제적 재생산분업 내 유입요인

여성노동이주의 주요 유입요인은 유입국의 재생산노동의 공백과 공적 복지체계의 미비라고 앞서 언급하였다. 재생산노동의 공백과 공적 복지체계의 미비를 관통하는 맥락은,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에도 불구하고 가부장제의 성별역할분담과 재생산노동을 여전히 여성과 가정의 몫으로 여겨 시장화하려는 정부정책의 한계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유입요인이 국제적 재생산분업의 맥락에서 ‘성·유흥산업으로 유입되는 여성이주’에도 유사하게 적용될 수 있는가? 하지만, 이 경우 그 유입요인이 재생산노동의 공백

과 공적 복지체계의 미비라고 단언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성·유흥산업 여성이주의 유인요인 역시 유입국의 가부장제와 전 지구적 자본주의와 맞닿아 있는 측면이 유사하게 발견된다. 보다 구체적으로, 성·유흥산업 여성이주의 유인요인은 성별성에 기반을 둔 유입국의 가부장제 유지의 기제와 관련된다. 유입국의 가부장제 아래, 유입국 남성의 남성성 회복·유지·강화를 위해 여성이주가 활용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일본 내 필리핀 여성이주 성·유흥노동자를 면담 조사한 파레나스의 연구에 따르면, 일본 남성들이 이주여성이 종사하는 클럽을 찾는 이유는 단지 성을 사기 위함이라기보다 남성으로서 정체성(남성성)을 인정받고 존중받고 싶어서라고 설명한다(Parreñas, 2008; 2011). 실제로 클럽에 종사하는 이주여성의 경우, 아름답게 단장하여 여성성을 드러내고, 노래와 춤 및 고객을 위한 편의 제공, 고객의 대화 상대가 되어주는 역할을 함으로써 이들에게 성적 서비스를 제공한다. 유사하게 일본 동경의 술집(바)에서의 이주여성 호스티스의 일에 주목한 앨리슨(Allison)의 연구도 일본 남성들은 낮 시간의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를 완화하기 위해 술집을 찾으며, 호스티스의 일은 남성의 원기회복 및 스트레스 완화 같은 역할임을 보여준다(Allison, 1994). 일본의 대규모 성산업의 부흥에는 일본 남성의 아시아 여성에 대한 정형화된 이미지에 대한 수요가 있다는 것이다. 가난한 나라로부터 온 ‘온화하고 순종적이며 인내심 강한 전통적인 아시아 여성’이라는 이미지는, ‘성별역할분업을 포기한 오만하고 히스테릭한 일본 여성’과는 대비되는 이미지로 일본 남성에 구축되어, 일본 남성의 남성성을 보장하는 수단으로 작동한다(이지영, 2012: 83).

전 지구적 자본주의 경제에서 성의 소비와 생산은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층위에서 나타난다. 개발국 남성의 남성성을 위해 이주여성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단순히 성매매만이 아니라, 감정적 돌봄, 정서적 위안, 상대 남성이 우월적 존재로 느끼게 하기 등의 상품화된 감정노동 등도 함께

포함된다. 예를 들어, 호앙(Hoang)은 글로벌 경제에서 개발국 남성 및 저개발국출신 부유한 남성과 저개발국 성·유홍노동 여성 간의 다양한 층위와 연계성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Hoang, 2010). 베트남 호치민 시의 성·유홍노동자들은 고급, 중급, 저급의 층으로 관찰되어진다. 제1세계 남성들이지만 배낭여행을 하고 있는 주머니사정이 가벼운 남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여성, 제1세계 하층계급 남성들 — 데이트 경험도 적고, 자국에서는 남성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 을 상대하는 여성, 해외 거주하는 베트남 남성을 애인처럼 상대하는 여성 등으로 나뉜다. 각각 층위의 남성들에게 결핍되어 있거나 혹은 각 층위의 남성들이 열망하는 보살핌, 친밀성, 섹슈얼리티는 상이하며, 이에 따라 성·유홍노동자들은 세분된 층위에 적합한 다양한 방식으로 성·유홍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⁶⁾

그렇다면, 이주여성 성·유홍노동자는 어떻게 이주여성 가사노동자와 결혼이주자와 연계되는가? 재생산노동의 측면에서 본다면 이들 간의 유사점이 발견된다. 가사노동자와 결혼이주자가 가정 내에서 전형적인 재생산노동을 수행한다면, 성·유홍노동자는 가정 밖에서 여성성을 담보로 남성노동자의 생산력을 뒷받침하는 성적 욕망의 충족, 원기회복, 비위 맞추기, 대화, 음식접대, 휴식과 안락함 제공 등의 재생산노동을 수행한다. 그러나 유입국의 유입요인의 측면에서 본다면, 이들 간의 차이점도 일면 목도된다. 가사노동자와 결혼이주자의 경우, 유입국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로 인한 돌봄 공백, 다시 말해 유입국의 재생산노동의 수요가 직접적인 유입요인이 된다. 반면 성·유홍노동자의 경우, 재생산노동의 수요충족이라기 보

6) 아마도 이 지점에서 성·유홍산업에 종사하는 이주여성과 비이주여성 간의 유사점 및 차이점을 찾을 수 있다. 성·유홍산업이 가부장제 유지의 이데올로기 기제로서 이해된다면, 이주여성과 비이주여성 간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하지만, 전 지구적 자본주의화의 영향으로 성·유홍산업이 다양화되고 위계화 되는 추세 속에서, 제3세계 성·유홍여성에 대한 유입국의 보다 직접적인 수요가 발견된다. 외국인인기에 어눌하게 구사하는 언어, 작고 아담한 몸매, 순종적인 제3세계 여성이라고 묘사되는 이주여성은 유입국의 성·유홍산업에서 새로운 층위를 차지하고 있다.

다 유입국 가부장제의 바탕이 되는 성별성 유지의 기제 측면이 강하다. 즉, 이주여성은 유입국 남성의 남성성 회복·유지·강화를 위한 성적 대상으로 활용된다. 하지만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가사노동자, 결혼이주자, 성·유흥노동자 모두 유입국 가부장제의 맥락에서 유입의 원인과 동학이 작동한다는 점이다.

성·유흥산업으로 유입되는 이주여성에 대한 유입국의 입장은 일반적으로 암묵적 승인과 피상적 대응 사이를 오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일본의 경우, 2000년대 중반 미국 국무부 인신매매 연례보고서가 일본정부를 인신매매 출처국으로 평가하기 이전에는, 성·유흥노동 이주여성에 대해 주목하여 관여하지 않았었다. 오히려 일본 성산업 시장에서 수요가 있는 이상 이들 이주여성의 유입을 암묵적으로 묵인하는 입장이었다. 일례로, 아시아 국가들 중 이주 가사노동자에 대응하는 비자가 존재하는 싱가포르와 홍콩과는 달리, 일본과 한국은 이주 가사노동자에 대응하는 비자가 존재하지 않지만, 이주 성·유흥종사자에 대한 비자는 존재하는 국가들이다. 흥행(예술흥행)으로 불리는 비자형태는 다양한 비판이 제기됨에도 불구하고 이들 국가들에서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유입국의 이러한 정책은 성·유흥영역에서 재생산노동의 상품화, 재생산노동의 여성화를 조장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3) 국제적 재생산분업 내 이주여성의 위치

성·유흥이주노동자의 경우, 송출국과 유입국 모두에서 이들의 권리와 지위에 관한 논의는 상당히 미비한 실정이다. 송출국의 입장에서 이주여성의 권리와 지위를 신장시키는 움직임은 차칫 인력송출의 수가 줄어들게 됨을 의미할 수 있으며, 이는 송금과 같은 외화수입이 줄어들 수 있음을 의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유입국의 입장에서 성·유흥이주노동자는 국내

성산업의 수요를 만족시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국내외 사회에서 이에 대해 특별히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이상 대체로 이는 묵인된다(Parreñas, 2008: 149-150).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고용주의 입장에서는 특별히 의지할 친구, 친척, 가족들과 떨어져 홀로 이주하는 젊은 외국인 여성들은 관리가 용이하고 수익성 높은 순종적인 고용인이다.

특히나 유입국의 정책은 이주여성 자신의 목소리보다 이들을 고용하는 고용주 및 관련 이해자의 요구가 반영되기에 용이한 조건을 형성한다. 이주여성의 체류자격 중 기간을 살펴보면, 이들의 권리와 지위가 유입국의 이해관계를 반영하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유입국의 가정 내에서 노동하는 이주가사노동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장기기간의 체류기간을 갖는다. 유입국 개별가정의 요구를 반영하여 최근 들어 점점 더 장기체류가 가능해지고 있다. 하지만 이들 여성들이 유입국의 사회에 편입이나 사회권, 내국인과의 결혼을 통한 영주권이나 시민권 획득에 대해서는 까다롭게 제한하고 있다. 반면에 성·유흥산업의 이주여성의 체류기간은 단기기간이다. 이러한 단기 체류기간은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문제에 관련된 이주여성들이 유입국을 떠난 이후이다. 그 결과, 관련 문제 및 요구가 유입국 사회 내에서 지속적인 동력을 갖고 제기되기 어렵다. 문제가 제기되더라도, 유입국 성·유흥산업에서 수요는 대체된 다른 이주여성들이 채우게 되는 방식이 된다.

4. 한국의 성·유흥산업으로 유입되는 여성이주와 국제적 재생산노동분업

이 장에서는 한국의 사례를 통해 앞 장에서 살펴본 국제적 재생산노동분업의 구조가 국가적 차원의 분석 수준에서 구체적으로 투영되고 운영되

는 모습의 몇몇 지점들을 탐색해 보고자 한다. 어떠한 지점에서 한국 사례는 보편적인 국제구조의 특징을 반영하는가? 또한 어떠한 지점에서 한국 사례는 차이를 보이는가? 이 장도 역시 앞서 제시한 국제적 재생산노동분업의 세 가지 분석 지점 — 1) 송출요인, 2) 유입요인, 3) 이주여성의 위치 — 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한국의 성·유흥산업에 이주여성들이 유입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중반 이후이다. 당시 외국인여성들이 본격적으로 유입된 곳은 미군과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기지촌 및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이 중심이었다. 1962년 이후 외국인연예인의 국내유입은 허가제로 이루어지다가, 1999년 정부의 외국인 국내공연에 대한 규제가 추천제로 변경되고 외국인 여성에 대한 출입국 관리법상 예술홍행(E-6)비자의 발급도 용이해져, 1996년부터 2002년까지 이주여성들의 수는 급증하였다(설동훈 외, 2003; 이병렬 외, 2014: 25-28).⁷⁾

이주여성이 한국의 성·유흥산업에 진입하는 경로는 다양하다. 예술홍행사증(E-6), 관광 또는 단기방문을 가장하여 무사증입국 또는 단기사증, 결혼을 통하여 거주사증(F-2)을 받는 경우, 그 외 유학생 등 다양하다(설동훈 외, 2011: 153-163). 하지만 한국의 성·유흥산업으로 유입되는 이주 여성의 규모는 주로 예술홍행사증 규모로 파악하게 된다.⁸⁾ 그 이유는 예

7) 한국은 국제이주 흐름에서 유출국에서 이민유입국으로 변모하고 있다. 한국은 1950~1990년대까지 미국과 일본으로 향한 결혼이주여성의 송출국가였고, 1960년 중반~70년대 중반에는 독일로 간호인력 송출국가였으며, 1980년대 이후에는 미국, 호주, 일본 등의 성·유흥산업에 종사하는 여성들의 송출국이기도 하다. 특히 성·유흥산업 종사 여성들의 측면에서 보면, 한국은 송출국이자 유입국의 이중적 위치에 있다. 이는 2000년대 중반 성매매특별법 발표 이후, 극한의 생활전선으로 내몰린 성·유흥산업에 종사했던 기존의 많은 한국여성들이 선진국으로 이주를 결정한 결과이기도 한다. 이와 같이, 국제적 재생산노동분업의 맥락에서 이주여성을 분석하는 것은 한국처럼 이주유출에서 이주유입으로의 이중적 위치를 경험하는 국가에 대한 설명을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본 논문에서는 한국의 성·유흥산업에 유입되는 외국인 여성에 초점을 두고 논의한다.

8) 한국은 일본과 함께 아시아 지역에서 '연예인' 명목의 비자정책, 즉 예술홍행비자를 시행하고 있는 유일한 국가이다. 예술홍행비자 소지자는 내국인으로 충원하지 못하는 특수적

술홍행비자가 본래의 목적과 다르게 이주여성이 ‘유흥접객원(호스티스)’으로 유입되어오는 통로로 주로 이용되고 있기 때문이다(소라미, 2016: 1). 또한 위장입국 혹은 단기방문 등 원래의 체류자격과 달리 유입되는 경우, 한국 내 성·유흥산업의 이주여성 규모 파악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점이 지적된 이후인 2004년부터 예술홍행비자는 예술·연예(E-6-1), 호텔·유흥(E-6-2), 운동(E-6-3)로 세분화되어 운영되고 있다. 한국의 성·유흥산업의 이주여성 중 많은 수가 호텔·유흥(E-6-2)비자를 소지하고 있다.⁹⁾

1998년부터 2001년까지 매년 100%에 가까운 성장률을 보이던 예술홍행비자 소지 입국자의 수는 2002년을 고비로 감소하기 시작하여, 2005년 이후부터는 약간의 변동이 있지만 4,000여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최근 이들은 기지촌 및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 중심을 벗어나, 서울·부산 등 대도시의 유흥업소나 관광클럽뿐만 아니라 지방중소도시와 항구지역에 이르기까지 전국으로 퍼져나가는 경향을 보인다(김태정, 2014;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15: 6). 또한 출신국가별, 제공하는 성적서비스 유형에 따라 이주여성이 종사하는 업종이 세분화되기도 한다. 예를 들면, 필리핀 여성들은 주로 외국인 전용클럽이나 기지촌 주변 업소에서 미군을 대상으로 일하고, 태국여성들과 구소련지역 여성들은 국내 남성들을 대상으로 일하며, 중국여성들은 노래방 등에서 주로 국내 남성과 중국인 외국인노동자를 대상으로 활동하는 것으로 나타난다(설동훈 외, 2011: 72-88). 1990년에

종으로 정부로부터 엄격한 비자 심사과정을 거쳐 취업사증을 받아야 하는 전문직 종사자(전문 인력)로 분류된다(고현웅 외, 2006: 51). 「출입국관리법」은 예술홍행비자를 “수익이 따르는 음악, 미술, 문학 등 예술 활동과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연예, 연주, 연극, 운동경기, 광고·패션모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활동을 하려는 사람”으로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과 활동범위를 규정하고 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

- 9) 호텔·유흥(E-6-2)비자 소지자라고 해서 무조건 ‘유흥접객원’의 일을 하는 것은 아니다. 호텔이나 나이트클럽의 라이브 무대에서 가수나 반주자로 일하는 이주자들도 있다. 이들의 경우, 음악공연을 주로 하는 ‘연예인’으로 간주 할 수 있을 것이다. 자세한 사항은 김민정(2009; 2012) 참조.

서 현재까지 예술홍행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여성을 국적별로 보면, 필리핀, 러시아, 중국의 순으로 높게 나타난다. 이 장에서는 한국의 성·유흥산업에 유입되는 필리핀여성과 러시아여성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1) 국제적 재생산분업 내 송출요인

국제적 재생산분업의 맥락에서 나타나는 빈곤이라는 송출요인의 동학은 한국의 성·유흥산업으로 유입되는 필리핀여성과 러시아여성에게도 유사하게 적용된다.

성·유흥노동자를 택한 필리핀여성의 경우, 가사노동이나 결혼이주를 택한 이들보다 더 극심한 빈곤을 경험한 경우가 많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해외의 가사노동자로 일하기 위해서는 취업소개소에 소개비로 일정 금액을 지불해야 하는데, 이들 대부분은 그 금액을 지불할 형편이 되지 못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이들에게 성·유흥직종으로 선택이 더욱 용이했던 이유는 바로 “선 이주, 후 결제(fly now, pay later)” 시스템 때문이다(Parreñas, 2011: 18). 실제로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호텔공연, 나이트클럽, 단란주점, 외국인전용클럽, 시멘스 클럽 등에서 근무하는 필리핀 이주노동자의 경우, 현지 에이전시나 한국 프로모터가 여권과 비자와 OEC(Overseas Employment Certification) 등 서류를 대행하고 항공료 등을 대신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이병렬 외, 2014: 55). 특히 필리핀여성이 해외노동 유형 중에서 엔터테인먼트를 선택하는 것은 다른 직종을 선택하는 것과 큰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다. 물론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긍정적이지 않지만, 여성들이 돈을 벌기 위해 이주를 하려고 할 때 여성들의 노동에 대한 수요가 있는 곳은 남성에 비해 제한되어 때문에, 필리핀여성이 선택할 수 있는 일자리는 많지 않다. 한국과 같은 유입국은 필리핀 가사노동자에 대한 유입을 허용하지 않고 있기 때

문에, 한국으로 이주하는 필리핀여성들이 선택할 수 있는 일자리의 폭은 더욱 좁다고 할 수 있다(백재희, 2000: 36).

러시아여성의 경우, 1990년 후반과 2000년대 초반까지 예술홍행비자 체류자격의 입국이 급증하다가, 2003년 한국정부가 외국인여성무회 사증에 대한 발급을 중단함에 따라 그 증가세가 줄어들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예술홍행비자 이외의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한국의 성·유흥산업에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된다. 러시아여성의 한국 내 유입은 1990년대 후반 러시아의 경제사회적 변화와 직접적으로 관련된다. 계획경제체제에서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로의 급격한 체제전환으로 인해, 러시아도 대부분의 사회주의 국가들처럼 심각한 경제위기를 경험했다. 경제적 상황은 러시아 여성들에게 더욱 불리하게 작동했다. 러시아여성들은 러시아 남성들에 비해 보다 적은 수입을 받았으며, 사실상의 고용진입이 더욱더 열악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경제상황 하에서 일명 '나타샤'로 표현되는 러시아여성들이 각국의 성·유흥산업으로 '수출'되는 양상을 보였다(장준오 외, 2011: 26). 1990년대에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러시아 여대생의 60%는 돈을 벌기 위해 성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결과가 발표되기도 하였다(장준오 외, 2011: 88-92). 최근 한국 내 성·유흥산업에 종사하는 러시아여성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조사에 따르면, 이들이 한국에 오게 된 이유도 "단적으로 돈을 벌기 위함"이라고 대부분 답한다(장준오 외, 2011: 321-343).

2) 국제적 재생산분업 내 유입요인

국제적 재생산분업의 맥락에서 유입요인의 동학으로 유입국 가부장제의 성별성 유지기제가 언급되었다. 즉, 이주여성은 유입국 남성의 남성성 회복·유지·강화를 위한 성적 대상으로 활용된다는 점이다. 하지만 한국 내 종사하는 필리핀여성과 러시아여성의 경우, 이러한 보편적인 특징을 받

영하면서도 동시에 다소 상이한 점이 발견된다. 이러한 상이점은 이들 출신 국가의 차이, 이들이 종사하는 직종의 차이, 이들이 상대하는 남성의 차이에 기초한다.

필리핀여성의 경우, 주로 미군 기지촌 주변의 클럽으로 유입된다. 1990년대 중반 한국의 성산업이 확대되고 기지촌 업소에서 종사하였던 기존 국내여성들이 기지촌을 빠져나감에 따라, 대신 영어가 가능하고 저렴한 인건비의 필리핀여성들이 기지촌에 유입되기 시작하였다. 미군들은 “영어를 잘 하고, 작고 순해서 무릎위에 올려놓고 그들을 만질 수 있는(lab dance) 순종적인 아시아 여성”인 필리핀여성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고된다(김현미, 2004: 77). 어떤 경우 “너무 야하고 거친” 한국여자보다 순종적이고 비위를 잘 맞추는 필리핀여성이 더 인기 있다는 인터뷰를 찾을 수 있다(백재희, 2002: 210). 젊은 미군 청년들은 노출이 심한 옷을 입고 남성을 유혹하는 아시아여성과 클럽에서 즐기으로써 “남성의 자존심”을 사랑하고 싶어한다(챙실링, 2002: 234). 이주여성이 클럽에서 하는 일은 공연, 접대, 성적 서비스 제공 등 다양하다. 최근 여성가족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업소에서 하는 일에 대한 질문의 결과 ‘고객의 말벗 또는 같이 춤추거나 술을 마신다’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설동훈 외, 2011: 70). 그러나 클럽에서 일하는 필리핀여성의 경우 대부분 주스 쿼터제 시스템 하에 놓이게 되기 때문에, 주스를 더 팔아야만 하는 상황에서 남성 고객이 원하는 방식으로 더 순종적이고 더 비위를 맞추 수밖에 없다.

러시아여성은 1990년대 이후, 러시아의 경제난과 맞물려 백인여성(러시아여성)에 대한 한국남성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한국에 유입되기 시작하였다. 이들은 한국남성을 상대로 하는 도심의 고급 룸살롱이나 클럽, 바 등을 중심으로 유입되었다. 특히 러시아여성이 있는 업소를 찾는 한국남성들의 입소문을 통해 이들의 수요가 빠르게 확산되었다고 보고된다. 한국남성들은 러시아여성과의 경험을 통해 “(지금까지 열등감을 느껴왔던)

백인여성을 소유하게 되었다”고 느꼈으며, 이것은 동시에 남성의 능력을 증명하는 셈이었다. 당시 한국남성들 사이에서 러시아여성을 성매매한 경험이 큰 자랑거리가 된 것도 이러한 이유였다(김현선, 2002: 13-14). 2003년 무희사증 발급조치 이후에도 러시아여성들을 성매매 알선하여 경찰에 구속된 사례가 뉴스로 보도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들은 예술홍행비자가 아니라 다양한 경로로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장준오 외(2011)의 연구에서 보면, 러시아여성들은 여관, 안마방, 섹스방, 오피방에서의 직접적인 성매매뿐만 아니라 손님 옆에서 흥을 돋워주는 역할로서 노래방 도우미 등 다양한 유형의 업소에서 일하고 있다고 보고된다. 고객들과 말벗이 되어주기만 하면 되는 강남의 토크바(talk bar) 형태의 유흥업소에서 종사하기도 하는데, 한국의 중년남성들이 백인여성에 대한 막연한 동경심을 가지고 찾는다고 업종 관계자는 말한다(장준오 외, 2011: 281-298).

3) 국제적 재생산분업 내 이주여성의 위치

한국의 성·유흥산업으로 유입되는 이주여성의 지위는 미약하다. 이들의 문제가 사회 이슈화되었지만, 이에 대한 한국정부의 대응은 근본적인 문제해결이나 권리보호 차원이 아니라 국내적·국제적으로 문제제기가 된 예술홍행비자에 대한 표피적인 정책변화에 불과하였다. 이를 뒷받침하는 사례로 2003년 무희비자사증 발급조치를 언급하고자 한다.

19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초반에 예술홍행사증으로 입국하는 필리핀 여성들과 러시아계 여성들의 수가 급증하였다. 동시에 이들이 사증에 걸맞은 공연활동을 하기보다 성·유흥산업의 유흥접객원으로 종사한다는 비판도 함께 제기되었다. 특히 2001년 미국 국무부의 인신매매 실태보고서가 한국을 성매매 국가인 3등급으로 지정했고, 2002년부터는 새옴터와 두레방 등 국내여성단체들이 예술홍행비자를 통해 “정부가 국제적 성매매를 제도적으

로 보장해주고 있다”며 비판하기 시작했다(『한겨레21』, 2008.1.24). 언론에서도 ‘무용수’ 신분으로 들어온 러시아계 여성들이 성매매에 몰린다는 기사들을 쏟아냈다(『국민일보』, 2003.2.25; 『동아일보』, 2003.8.21). 이에 필리핀,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정부에서는 “외국인 무용수의 비자발급을 중단해 달라” 한국정부에 공식 요청하기에 이르렀다(『한겨레21』, 2008.1.24).

이에 한국정부는 ‘유흥업소 종사 외국인 여성무회 대책’을 발표하고, 2003년 6월 1일부터 ‘무용수’로 공연추천이 들어오는 외국인여성들에 대해서 비자발급을 중단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한국정부의 대책은 이주여성성·유흥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지위향상에 궁극적으로 기여하지 못하는 단지 피상적인 대책에 불과했다. 왜냐하면 첫째, 예술홍행비자 중 무회에 대해서만 비자발급을 중단하였기 때문에 ‘무회’가 아닌 ‘가수’에 대해서는 비자발급이 계속되었다. 정부의 대책이 “솔로몬의 지혜”였다는 냉소적인 기사제목이 적나라하게 보여주듯, 비자발급을 위해 이주여성들은 편법적으로 공연단의 자격을 바꾸어, 즉 카메라 앞에서 “춤추지 않고 ‘립싱크’”만으로도 체류자격을 획득할 수 있었다(『한겨레21』, 2008.1.24). 둘째, 주로 가수자격으로 유입되는 필리핀여성의 경우 정책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그 결과, 무회비자로 입국하였던 러시아 출신여성의 입국이 크게 줄었으나, 기지촌을 중심으로 유입되는 필리핀여성의 유입은 그 수가 오히려 증가하였다. 정부는 미군을 상대하는 필리핀여성들에 비해, 국내남성을 상대하여 여론의 이슈가 더욱 제기되는 러시아출신 여성들에 대해서만 비자강화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셋째, 러시아출신 여성들의 출입국통계를 살펴보면, 비자발급이 까다로워진 예술홍행사증 소지자의 입국은 줄었지만, 2000년대 중후반부터는 관광비자 및 단기비자 소지자의 입국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편법적인 경로로 성·유흥산업으로 유입되는 경우, 불법체류 신분이 될 가능성이 농후한 이들에 대해서는 정부의 체계적인 관리가 더욱 어려워졌다(장준오 외, 2011: 265).

결국, 무희비자가 중단되었다고 이주여성의 상황이 이전에 비해 좋아진 것은 아니었다. 이는 이주여성을 고려하여 마련된 제도라기보다, 국내외적 비판에 대한 단지 보여주기식 대응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5. 결론 및 함의

본 논문은 ‘이주의 여성화’라는 패턴화된 여성이주의 흐름을 국제적 재생산노동분업의 관점에서 분석해 보았다. 이를 1) 송출요인, 2) 유입요인, 3) 이주여성의 위치로 나누어, 가부장제와 전 지구적 자본주의가 교차한 국제적 재생산노동분업 맥락에서 ‘성·유흥산업으로 유입되는 여성이주’의 동학을 살펴보았다. 더 나아가 한국의 성·유흥산업으로 유입되는 여성이주를 함께 분석함으로써, 국제적 재생산노동분업이라는 국제구조가 한국 사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반영되어 실제로 작동하는지 살펴보았다. 본 논문이 이주 연구, 페미니즘 연구, 국제정의 연구에서 갖는 이론적·실천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논문은 성·유흥노동자를 국제적 재생산노동분업의 관점에서 살펴봄으로써 여성이주에 대한 기존 논의와 함께 연결될 수 있다. 비록 논의 대상이 성·유흥산업으로 유입되는 여성이주에 한정되지만, 전 지구적 차원의 재생산노동분업의 틀 속에서 여성이주를 다룸으로써, ‘이주의 여성화’로 대표되는 세 가지 직업군(가사노동자, 결혼이민자, 성·유흥노동자)이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어떻게 관련되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 다시 말해, 논문은 국제적 재생산노동의 성별분업의 관점에 기초하여 성·유흥노동자의 이주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기 때문에, 분석 대상인 여성이주 성·유흥노동자를 넘어 다양한 여성이주 전반을 포괄적으로 설

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둘째, 성·유흥산업에 유입되는 이주를 다루는 기존 논의는 주로 여성 인권의 관점에서 성을 매개로한 여성의 상품화(commodification)와 국제적 인신매매를 비판하는 연구들이다. 따라서 성·유흥산업에 유입되는 여성이주를 ‘비자발적’인 이주로 간주한다(설동훈 외, 2003). 이들 연구는 성·유흥산업에 종사하는 여성이주를 노동이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회의적이다. 이러한 관점은 보편적인 여성인권의 측면에서 성·유흥노동자의 권리와 지위, 성매매와 관련된 인권침해를 다룰 수 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그러나 성·유흥노동자의 이주를 비자발적인 이주로 봄으로써, 여전히 여성이주를 ‘자발’ 대 ‘비자발’의 이분법적 관점에서 다루고 있는 한계가 있다. 즉, 성·유흥산업에 종사하기 위해 이주를 결정한 여성의 선택이 얼마나 비자발적인지(혹은 강제적인지)에 주로 관심을 보인다. 물론 이주란 궁극적으로 이주여성 개인의 선택과 결정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것이지만, 여성이주를 ‘자발’ 대 ‘비자발’의 이분법적 관점으로 설명하기에는 여러 한계가 있다. 실제로 여성이주의 ‘자발성’과 ‘비자발성’은 어떤 근거로 나뉘며, 어떻게 나뉠 수 있는 것인지는 매우 논쟁적인 문제이다. 그러나 국제적 재생산노동분업의 맥락에서 성·유흥노동자의 이주를 살펴보는 본 논문은 이러한 ‘자발’ 대 ‘비자발’ 논리의 틀을 벗어나고자 시도한다(Parreñas, 2011: 7). 무엇보다도 이주여성의 선택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들 여성의 선택이 이뤄지는 국내외 맥락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 함께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논문을 통해 이주를 결정한 여성의 선택이 어떠한 국내외적 제도와 구조 속에서 이뤄지고 있는지에 보다 초점을 맞출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주의 여성화’ 관점에서 성·유흥노동자의 이주를 다룸으로써, 여성이주의 규범적 이론화가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다. 여성이주의 기존 사회학적·인류학적 연구들은 ‘이주의 여성화’에 대한 현상적인

(descriptive) 접근을 주로 한다. 그러나 본 연구는 ‘이주의 여성화’를 국제적 재생산노동분업과 연결시킴으로써, ‘이주의 여성화’가 성불평등을 어떻게 유지시키고 기여하는지에 대한 규범적인(normative) 평가를 제시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영(Young, 2009)과 재거(Jaggar, 2009) 같은 여성주의 정치이론가들이 언급한 ‘성불평등의 악순환(vicious cycle of gender inequality)’을 야기하는 전 지구적으로 확장된 성별화된 재생산노동분업의 체계에 주목한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성·유혹산업으로의 여성이주가 국제적 재생산노동분업 속에서 어떠한 연유로 일어나는지, 어떠한 과정을 거치는지, 그것이 성·유혹노동자의 지위와 권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재생산노동분업의 동학이 어떻게 재생산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룸으로써, 재거의 표현을 빌리자면, 국제적 재생산노동분업이라는 “전 지구적 젠더정의의 논의에서 [일반적으로] 간과된 부분”을 폭로할 수 있었다고 본다(Jaggar, 2009: 42-43). 이는 결국 성불평등한 제도와 구조의 국내외적 차원을 살펴보고, 이러한 송출국과 유입국의 국내외적 차원이 어떻게 상호 밀접하게 연계되고 서로 강화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국제정의 연구에 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고현웅·김재원·김동심 외(2006), 「외국인 연예인도입 실태조사 및 정책비교연구」, 문화관광부, 서울: IOM 국제이주기구.
- 국가인권위원회(2012), 「이주인권 가이드라인」,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 김경미(2009), “이주의 여성화와 체제전환 이후 동유럽여성의 유럽 내 이주”, 『한·독 사회과학논총』, 제19권 3호, 59-84쪽.
- 김민정(2009), “한국 관광호텔 라이브 바의 필리핀 여가수”, 『동남아시아 연구』, 제19권 2호, 219-251쪽.
- _____ (2012), “필리핀 여성의 젠더화된 이주”, 『한국여성학』, 제28권 2호, 33-74쪽.
- 김태정(2014), “E-6-2 소지 외국인 여성들의 실태”, E-6비자 이주노동자 인권 실태와 개선방향 토론회 자료집(2014.7.28).
- 김현경(2015), “‘여자 되기’와 ‘애인이라는 노동’”, 『사이間 SAI』, 제19권, 9-40쪽.
- 김현미(2004), “‘친밀성’의 전지구적 상업화”, 『여/성이론』, 제11권, 68-102쪽.
- 김현선(2002), “한국 성산업에 유입된 이주여성의 실태와 해결방안”, 아시아 성산업 근절을 위한 네트워크 결성과 성매매방지 특별법제정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 발표문(2001.10.9.-11).
- 두레방(2007), 『2007년 경기도 외국인 성매매피해여성 실태조사 연구용역 사업보고서』, 의정부: 두레방.
- 배리, 캐슬린(2002), 『섹슈얼리티의 매춘화』, 정금나·김은정 옮김, 서울: 삼인.
- Barry, K.(1996), *The Prostitution of Sexuality*,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 백재희(2000), “외국여성의 한국 성산업 유입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여성학과 석사학위 논문.

_____(2002), “I’m Entertainer, I’m not Sex Worker”, 막달레나의 집 엮음, 『용감한 여성들』, 서울: 삼인, 191-228쪽.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2015), 『예술홍행비자소지 외국인 인권보호』, 서울: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설동훈·김현미·하건수 외(2003), 『외국여성 성매매 실태조사』, 서울: 여성부.

_____.한건수·정경숙 외(2011), 『외국인 여성 성매매 실태 및 제도 개선 방안 연구』, 서울: 여성가족부.

소라미(2016), “일본의 인신매매 정책에 비추어 본 한국의 예술홍행비자 소 비 이주여성의 인신매매 피해에 대한 대응 방안 검토”, 인신매매 일본 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쟁점 토론회: 예술홍행비자 소지 여성 인권을 중심으로 자료집 발표문(2016.02.23).

안태운(2012), 「경기도 기지촌 외국인 여성 성매매 피해 실태분석」, 수원: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오윤아·허재준·강대창 외(2012), 「동남아 주요 국가들의 인력송출 현황과 한국의 대응방안」, 세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유영님(2010), “외국인 성매매 피해여성이 겪는 어려움과 정책 대안”, 『여성 과 인권』, 제4권, 49-60쪽.

윤덕희(2001), “동유럽의 체제전환과 여성의 사회적 지위의 변화”, 『한국정치학회보』, 제35권 2호, 389-407쪽.

이병렬·김연주·박정형 외(2014), 『예술홍행비자 소지 이주민 인권상황 실태조사』,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이지영(2012), “일본에서의 아시아 이주여성에 대한 사회 담론과 정책적 대응”, 『아시아여성연구』, 제51권 2호, 73-101쪽.

장준오·이윤미·한종만 외(2011), 「국제인신매매 현황, 문제점 및 대책」,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_____.추경석·최경식(2009), 「성적착취를 위한 국제인신매매」, 서울: 형

사정책연구원.

첵실링(2002), “사랑을 배우고, 사랑에 죽고”, 막달레나의 집 엮음, 『용감한 여성들』, 서울: 삼인, 229-255쪽.

최서리·마루하아시스·김경미(2013), 「가사분야 외국인 고용의 쟁점」, 일산: IOM 이민정책연구원.

페테리치, 실비아(2013), 『혁명의 영점』, 황성원 옮김, 서울: 갈무리, Federici, S.(2012). *Revolution at Point Zero*, Oakland, CA: PM Press.

포루뚜나띠, 레오쁠디나(1997), 『재생산의 비밀』, 윤수중 옮김, 서울: 박종철 출판사, Fortunati, L.(1981), *L'arcano della Riproduzione*, Venezia: Marsilio Editore.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편집팀(2010), “외국인 성매매 피해여성의 실태와 지원 방안”, 『여성과 인권』, 제4권, 2-10쪽.

Allison, A.(1994), *Night Work*,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Anderson, B.(2000), *Doing Dirty Work?*, London: Zed Books.

Asis, M. M.(2005), “Caring for the World”, in *Asian Women as Transnational Domestic Workers*, eds. S. Huang, B. S. A. Yeoh, and N. A. Rahman, Singapore: Marshall Cavendish Academic, pp. 21-53.

Belanger, D. and T. G. Linh(2011), “The Impact of Transnational Migration on Gender and Marriage in Sending Communities of Vietnam”, *Current Sociology*, 59(1), pp. 59-77.

Castles, S. and M. J. Miller(2009), *The Age of Migration*, 4th Edition, New York: Guilford Press.

CEDAW(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2011), Forty-Ninth Session, 11-29 July 2011, Concluding Observation of the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Republic of Korea (CEDAW/C/KOR/CO/7).

Ehrenreich, B. and A. R. Hochschild(2002), “Introduction”, in *Global*

- Woman*, eds. B. Ehrenreich and A. R. Hochschild, New York: Metropolitan Books, pp. 1-13.
- Freeman, C.(2005), "Marrying Up and Marrying Down", in *Cross-Border Marriages*, ed. N. Constable, Philadelph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pp. 80-100.
- Hoang, K. K.(2010), "Economies of Emotion, Familiarity, Fantasy, and Desire", *Sexualities*, 13(2), pp. 255-272.
- Hochschild, A. R.(2000), "Global Care Chains and Emotional Surplus Value", in *On the Edge*, eds. A. Giddens and W. Hutton, London: Jonathan Cape, pp. 130-146.
- _____ (2002), "Love and Gold", in *Global Woman*, eds. B. Ehrenreich and A. R. Hochschild, New York: Metropolitan Books, pp. 15-30.
- Hondagneu-Sotelo, P.(2001), *Domestica*,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ILO(2010), *International Labour Migration*, Genève: International Labor Office.
- Jaggar, A. M.(2009), "Transnational Cycles of Gendered Vulnerability", *Philosophical Topics*, 37(2), pp. 33-52.
- Jones, G. and H. H. Shen(2008), "International Marriage in East and Southeast Asia", *Citizenship Studies*, 12(1), pp. 9-25.
- Kim, H. K.(2012), "Marriage Migration Between South Korea and Vietnam", *Asian Perspective*, 36(3), pp. 531-563.
- Kofman, E., A. Phizacklea, and P. Raghuram(2000), *Gender and International Migration in Europe*, London and New York: Psychology Press.
- Lan, P. C.(2006), *Global Cinderellas*,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 Lutz, H.(2002), "At Your Service Madam! The Globalization of Domestic

- Service”, *Feminist Review*, 70(1), pp. 89-104.
- Misra, J., J. Woodring, and S. N. Merz(2006), “The Globalization of Care Work”, *Globalizations*, 3(3), pp. 317-332.
- Nakamatsu, T.(2003), “International Marriage Through Introduction Agencies”, in *Wife or Workers?*, eds. N. Piper and N. Rocés, Oxford: Rowman and Littlefield Publishers, pp. 181-201.
- Palriwala, R. and P. Uberoi(2005), “Marriage and Migration in Asia”, *Indian Journal of Gender Studies*, 12(2-3), pp. v-xxix.
- _____ (2008), “Exploring the Links”, in *Marriage, Migration and Gender*, eds. R. Palriwala and P. Uberoi, New Delhi: Sage Publications, pp. 23-60.
- Parreñas, R. S.(2001), *Servants of Globalization*,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 _____ (2005), *Children of Global Migration*,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 _____ (2008), *The Force of Domesticity*, New York and London: New York University Press.
- _____ (2011), *Illicit Flirtations*,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 Piper, N.(2008), “International Migration and Gendered Axes of Stratification”, in *New Perspectives on Gender and Migration*, ed. N. Piper, New York: Routledge, pp. 1-18.
- _____ and M. Rocés(2003), “Marriage and Migration in an Age of Globalization”, in *Wife or Worker?*, eds. N. Piper and M. Rocés, Oxford: Rowman and Littlefield Publishers, pp. 1-23.
- Sassen, S.(1988), *The Mobility of Capital and Labor*,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_____ (2002), “Global Cities and Survival Circuits”, in *Global Woman*,

- eds. B. Ehrenreich and A. R. Hochschild, New York: Metropolitan Books, pp. 177-192.
- Suzuki, N.(2003), “Transgressing ‘Victims’”, *Critical Asian Studies*, 35(3), pp. 399-420.
- Truong, T. D.(1996), “Gender, International Migration and Social Reproduction”, *Asian and Pacific Migration Journal*, 5(1), pp. 27-52.
- Wee, V. and A. Sim(2005), “Hong Kong as a Destination for Migrant Domestic Workers”, in *Asian Women as Transnational Domestic Workers*, eds. S. Huang, B. S. A. Yeoh, and N. A. Rahman, Singapore: Marshall Cavendish Academic. pp. 175-219.
- Yeoh, B. and E. K. Heikkila(2010), *International Marriages in the Time of Globalization*, New York: Nova Publishers.
- Young, I. M.(2009), “The Gendered Cycle of Vulnerability in the Less Developed World,” in *Toward a Humanist Justice*, eds. D. Satz and R. Reich,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인터넷 자료〉

- U.S. Department of State(2014), *Trafficking in Person 2014*,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https://www.state.gov/documents/organization/226844.pdf>(검색일: 2016.10.20).

〈신문·잡지기사〉

- 『국민일보』, 2003.2.25, “러 여성에 ‘공연비자’ 발급 중단”.
- 『동아일보』, 2003.8.21, “외국여성 연예인들 인권침해 심각”.
- 『한겨레21』, 2008.1.24, “필리핀에서 건너온 ‘춘희’들”.

〈Abstract〉

Women's International Migration to the Sex/Entertaining Industries: Focusing on the International Division of Reproductive Labor

Kim, Hee-Kang* · Song, Hyung-Joo**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women's international migration to the sex/entertaining industrie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international division of reproductive labor. The international division of reproductive labor refers to the internationally divided as well as gendered separation between productive labor and reproductive labor. That is, it implies that Third World women move to the First World where they mostly perform the reproductive labor of that First World. While many current studies on migrant sex workers/entertainers are largely concerned with the issues of sex trafficking and the violation of women's human rights, this paper approaches the international migration of sex workers/entertainer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global and domestic structures of the international division of reproductive labor, where the systems of patriarchy and international capitalism intersect. This paper contributes to the addressing of how migrant sex workers/entertainers are connected to migrant domestic workers and marriage migrants, how migrant women's choices are constituted within/by broad structures and institutions, and how the 'feminization of migration' renders the global system of gender inequality.

Key words: international division of reproductive labor, women's migration, feminization of migration, sex workers/entertainers, E-6 visa

* Lead author,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Korea University

** Corresponding author, Senior Researcher, Institute of Governmental Studies, Korea University